

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5. 21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3년 5월 17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5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3. 5. 21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추강우)

가. 제안이유

-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'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공유재산 매각처분 : 3건 3필지 163㎡
- 재산의 표시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구분	소재지	지목 (구조)	전체 면적	신청 면적	재산가액 (공시지가)	비고
1	매각	괴정동 240-91	임야	125	18	20,700	토지
2	매각	다대동 85-18	잡종지	97	97	97,000	토지
3	매각	다대동 49-1	전	48	48	48,000	토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괴정동 240-91번지 임야 18㎡는 1993. 4. 27 부산시 소유에서 사하구로 승계된 재산으로서

동주여전 진입로변에 위치하며 신청인 전대성 씨가 81. 4. 30 이전부터 블록스레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매각조건에 해당됨.

- 다대동 85-18번지 잡종지 97㎡는 1993. 3. 27 부산시에서 승계 받은 구소유의 잡종재산으로써 신청인 박지연이가 현재 세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재산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써 당초 매수 때부터 신청인이 점유해 온 토지이므로 신청인에게 매각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대동 49-1번지 전 48㎡는 1993. 3. 10 부산시에서 사하구로 소유권이 승계된 재산으로써 신청인 조병준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구역내에 포함된 토지이므로 신청인에게 매각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 (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)